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1054
----------	-------

제출연월일 : 2026. 9. 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등의 설치·경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05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3호)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

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2.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2.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③ (현행과 같음)
③ (생략)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	(제2항)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 2. 「교육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 (일반회계로부터 의 전입)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동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에 맞추어,
- 국세 교육세 세입 예산 중 보통교부금으로 전입하던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의 납세의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전입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 ※ 동시 개정 추진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하는 내용이 삭제(제3조제2항제2호*) 예정인 바, 교육세의 목적에 맞는 재원의 활용방법 규정 필요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제2항 제2호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❶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②그 외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음 (붙임 참고)

※ ('26 고특회계 세입) 총171,234억원 중 교육세 19,692억원(11.5%), 교육세외 149,518억원(87.3%)

《 국세교육세 배분구조 변화 》

'26년 기준 현행 (고특 2.0조)		'26년 기준 개편 시 (고특 3.7조)	
교육세 납세분	배분	교육세 납세분	배분
(①호) 금융보험업분	고특회계(2.0조)	(①호) 금융보험업분	고특회계(2.0조)
(②호) 개별소비세분	영유특회계 60% (2.6조)	(②호) 개별소비세분	영유특회계 60% (2.6조)
(③호) 교통에너지환경세분		(③호) 교통에너지환경세분	
(④호) 주세분	보통교부금 40% (1.8조)	(④호) 주세분	고특회계 40% (1.8조)

○ 개정안은 교육세 배분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교육세 전입금 규모가 변동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간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편성될 경우 발생하는 것이나, 동 특별회계는 교육세 전입금이 증가하면 그 외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현 시점에 관련 사업의 확대·신규 편성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함

- 이에,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II.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김상길	나수정	김태경	송근현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수정	044-203-6913	crystal44@korea.kr

(붙임) 참고자료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23	2024	2025(본)	2025(추)	2026(본)	2026(추)
세입규모(A+B+C+D)	97,427	155,339	163,998	160,430	170,831	171,234
- 일반회계 전입	97,427	157,427	163,773	160,205	168,807	169,210
교육세(A)	15,199	22,414	21,690	20,372	20,466	19,692
(비율)	15.6%	14.4%	13.2%	12.7%	12.0%	11.5%
교육세 외(B)	82,228	135,013	142,083	139,833	148,341	149,518
(비율)	84.4%	86.9%	86.6%	87.2%	86.8%	87.3%
-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C)		496	2,863	2,863	4,592	4,592
(비율)		0.3%	1.7%	1.8%	2.7%	2.7%
- 내부거래(D)		△2,584	△2,638	△2,638	△2,568	△2,568
(비율)		△1.7%	△1.6%	△1.6%	△1.5%	△1.5%

자료: 교육부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